

EITC 정책토론회 자료

이 자료는 2006年 6月 22日 13:00 부터
報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2006. 6. 22

전병목
이상은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 2006. 6. 22(목) 15:00~17:30
-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5:00~15:10 인사말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5:15~17:15 주제발표 및 토론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

- ▶ 사회자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 발표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토론자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희대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운찬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부단장
 이병대 국세청 소득과악인프라추진단 단장
 이철인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본부장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순)

17:15~17: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30 폐회

목 차

I. EITC 도입 배경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외국 EITC 운영사례	5
3. EITC 제도 도입의 의의	10
II. EITC 도입방안	11
1. 적용대상	11
2. 수급 자격	15
3. 수급단위 및 수급액 결정	21
III. EITC 도입 모형 설계	23
1. 도입 모형	23
2. 제도확대 및 소요재원 조달	27
IV.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3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0
2.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검토	31
V.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	35

I

EITC 도입 배경

1

배경 및 필요성

-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층의 문제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발전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
 - 국가는 노인·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 등의 최저생활보장에 노력하여야 함
 - 동시에 저소득층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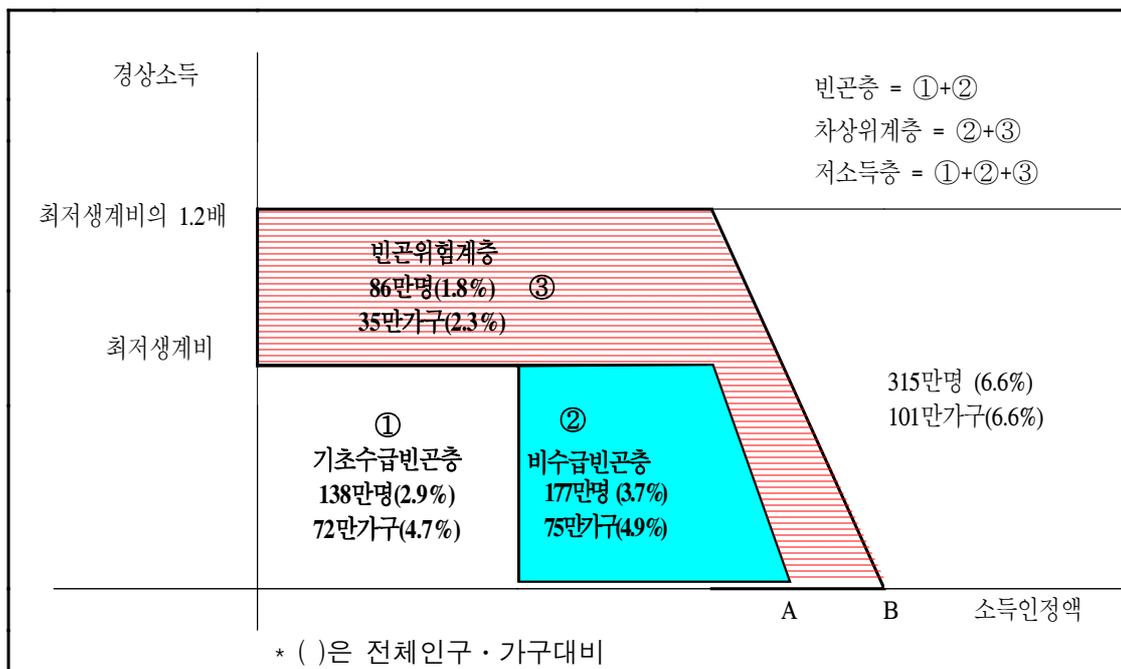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4대 사회보험과 절대 빈곤층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
 - 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상당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음
 - 일반국민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으로 노령·질병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1차적으로 보호
 - 그러나,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취약

-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연계 소득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면서 탈빈곤을 지원할 필요
 - 이에 2004년 이후 정부차원에서 EITC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도입을 결정
 - EITC 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기존의 재정지출 정책과 조세지원 정책을 결합한 형태로 노동유인과 행정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 제고가 가능
 - 구체적인 EITC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관련 제도 구축방안을 제시

가. 저소득층 실태

- 2003년말 현재 최저생계비의 1.2배 이하인 저소득층은 전체인구의 8.4%인 401만명, 182만 가구로 추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빈곤층은 138만명, 72만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전체 인구의 5.5%인 263만명, 110만 가구

<그림>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저소득층 규모



A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인 선

B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선

자료: 2005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차상위계층의 경제활동 실태

- 차상위계층 가구주 중 취업자 비율은 48%로 일반층의 91%보다 낮은 수준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기초수급자) 33%보다 높은 수준

<표> 가구주의 경제활동 실태

(단위: %)

	합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일반층	100	91.1	63.2	27.9	1.2	7.7
차상위계층	100	47.7	26.5	21.2	4.5	47.8
기초수급자	100	32.9	23.7	9.2	3.3	63.7

주: 일반층은 전체 계층 중에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을 제외한 가구

- 차상위계층의 임금근로자는 임시·일용직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일반층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표> 소득계층별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일반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가구
상용직(%)	73.5	12.8	5.2
임시직(%)	13.9	28.1	27
일용직(%)	12.5	58.9	67.7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률이 낮음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각각 29%, 25%만 가입되어 있어 일반층의 63%, 44%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수준
 - .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가입률도 차상위계층이 각각 50%, 99%로 일반층의 75%, 100%보다 낮은 수준
 - 특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고용주와 분담하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낮아 사회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현황

- 현재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최저생활을 보장받음
 - 동 제도는 보충급여의 원리를 적용하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
 -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비·교육·의료·주거비용 등을 지원
 - 최저생계비는 2006년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이후 수급인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예산은 증가 추세
 - 부양가족 기준 적용 등으로 수급인원이 제한되나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표> 기초수급자 추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급인원 (만명)	147	135	138	143	147
지원예산 (조원)	3.2	3.4	3.5	3.8	4.4
1인당 월지원액(천원)	221	251	254	236	299

- 기초수급자와 경제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비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대부분
 - 의료비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과 희귀난치병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며 2006년 예산은 738억원으로 10만명을 대상으로 함
 - 「희망 한국 21」 계획에 의해 차상위계층 일부에 의료급여를 단계적·선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일반 차상위계층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근로연계형 지원제도(EITC)를 도입하여 근로를 통한 능력개발 등 중장기적 빈곤탈출을 지원할 필요
 - 정액급여의 소득지원보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 사회적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이 대체적 연구결과

2

외국 EITC 운영사례

-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서 시행중으로 각국의 사회보장체계, 도입목적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임

가. 미국 EITC

-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1975년 도입
 - EITC는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진보·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지
 - 복지재원 증가에 따른 국민적 지지확보에도 유리하였기 때문
 - 클린턴 행정부(1990년대)에서 급여수준과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소득 지원 기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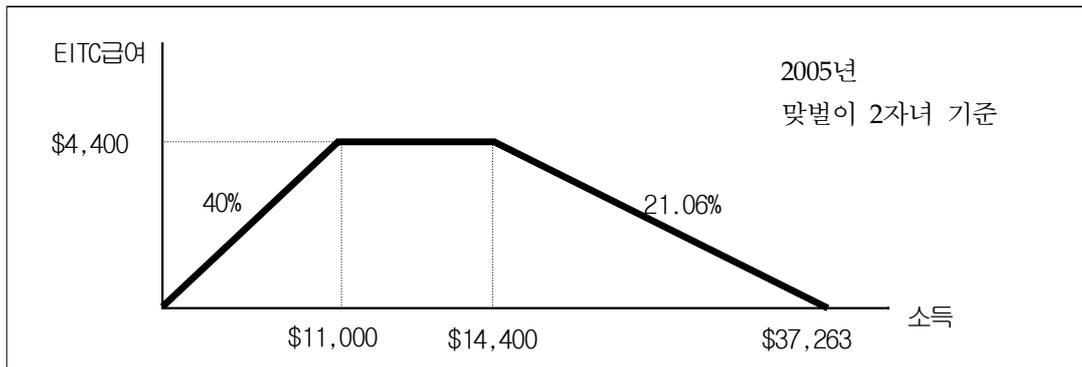
<표> EITC 제도의 변화

구 분	1975년	2005년	비 고
최대급여액	400 달러	4,400 달러	11.0배
최대 적용범위	8,000 달러	37,263 달러	4.7배
적용 가구	620만 가구(8.5%)	2,100만 가구(18.6%)	3.4배
예산 규모	12억5천만 달러(0.38%)	380억 달러(0.89%)	30.4배

주: ()는 전체 가구·예산대비 비율, 적용가구 및 예산규모는 1975년과 2004년 비교치

- 모형형태는 노동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1978년 이후 점증-평탄-점감 구간으로 구성
 - 시행초기에는 평탄구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점증-점감 변화구간에서 발생하는 급여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평탄구간 도입

- 2005년 맞벌이 2자녀 부양기준으로 최대급여는 연 \$4,400수준이며 최대적용 소득은 연 \$37,263임
 - 소득증가에 따른 급여증가율을 나타내는 점증률은 40%, 점감률은 노동유인 저해효과를 고려하여 이 보다 낮은 21.06%수준
 - 2005년 회계연도 EITC 신청금액은 397억달러이며 환급액은 346억달러



나. 영국 W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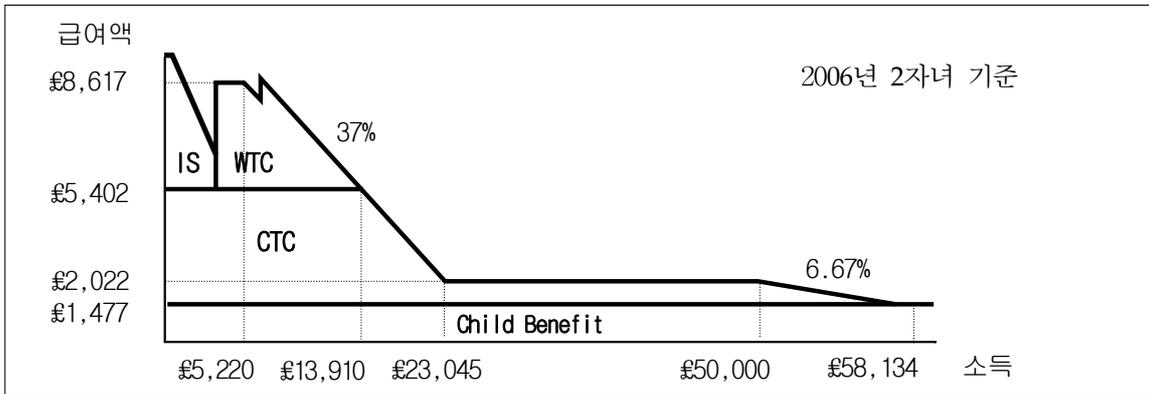
-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3년에 기존의 WFTC(Working Families Tax Credit)를 WTC(Working Tax Credit)와 CTC(Child Tax Credit)로 개편하고 기존 아동수당, 실업수당 등과 통합 운영
 - 빈곤아동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아동관련 수당 등이 중요한 소득 지원의 역할을 수행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미국의 경우와 달리 WTC제도는 최소 근로시간요건을 두고 있음
 - 즉 부양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 기타 3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필요로 함
 - 급여산정방식
 - 연소득 £5,220까지 최대급여액 지급, 이후 구간은 37%씩 급여 감소
 - 보육료 지원 : 맞벌이 부부 자녀보육료의 70%(주당 £300한도)

<표> WTC 구성요소와 급여액(2006)

구성 요소	지급액(연간)
기본 요소	£1,620
부부(편부모) 요소	£1,595
30시간 이상 근로	£660
장애 요소	£2,165

- 2006년 기준 WTC 최대급여액은 연 £3,875로 설정되었으며 수혜 대상가구는 135만 가구(2004년), 소요예산은 연 £47억(2004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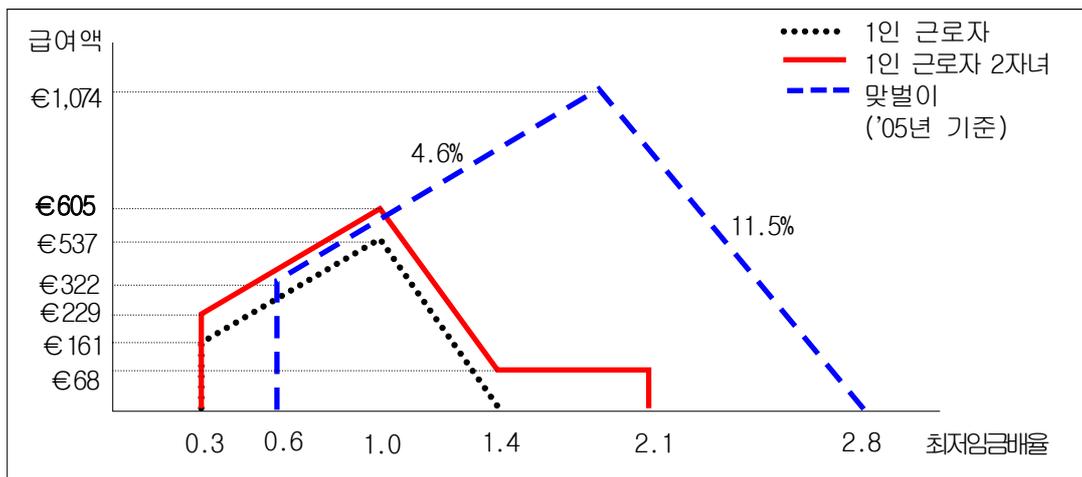
- * IS(Income Support) : 최대급여 연 £4,540
- * CTC(Child Tax Credit) : 최대급여 연 £3,925
- * Child Benefit : 첫째 아동 연 £884, 둘째 이후 연 £593

다. 프랑스 PPE

- 복지 수혜자들의 취업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2002년에 PPE(Prime pour l'Emploi)를 도입
- 모형 형태
 - 최저임금으로 일할 때 연간 얻을 수 있는 소득 수준에서 최대급여를 지급하고, 최소 소득구간을 설정하여 근로유인을 제고
 - 비생계형 소득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최소소득구간을 설정

- 평탄구간 없이 점증·점감으로 구성된 기본형에 아동 1인당 정액급부(1자녀당 연 €34)를 합한 모형
 - 최저임금 0.3배(연 €3,507) 이하 소득 : 지급대상에서 제외
 - 최저임금 0.3배~1.0배(연 €11,689)소득 : 점증률 4.6% 적용 (최저임금 1.0배 소득 수준에서 최대급여 연 €537)
 - 최저임금 1.0배~1.4배(연 €11,689~€16,364) : (연 €16,364-실제소득)×11.5%
 - 최저임금 1.4배~2.1배(연 €16,364~€24,547) : 아동 1인당 정액급부(연 €34)

- 최대급여 수준은 아동 2인 기준 연 €605이며 2004년 기준 대상가구 수는 900만 가구, 소요예산 연 €22억 수준



<참고> 각국 제도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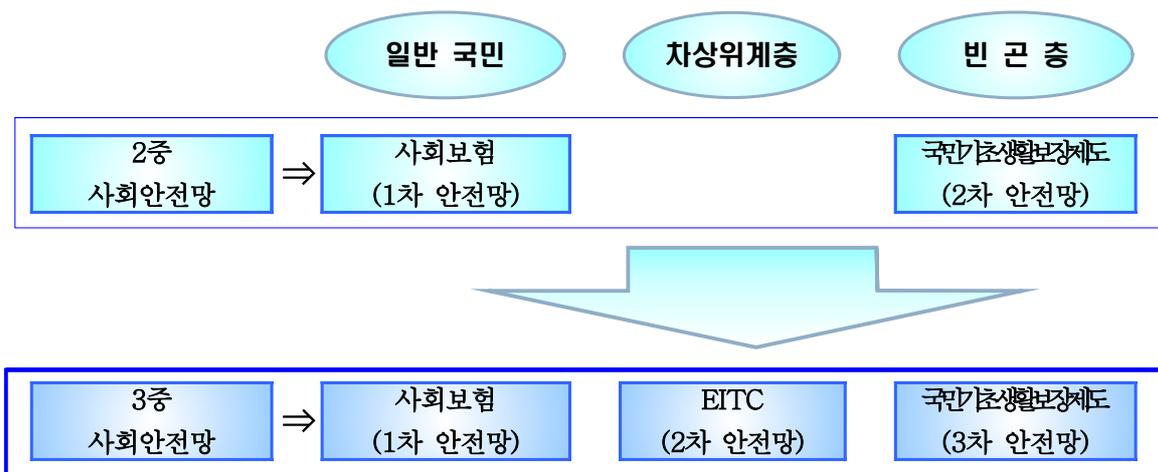
	미 국 EITC	영 국 WTC	프 랑 스 PPE
도입연도	1975년	2003년 (WFTC를 대체)	2002년
재산기준	·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 소득 연 \$2,700 이하	없 음 * WFTC는 이자·배당소득 연 £8,000 이하	없 음
최대적용 소득구간 (1인당 GNI대비)	연 \$35,458('04년) (89.0%)	연 £13,910('04년) (69.9%)	연 € 24,547('04년) (92.0%)
최대급여 소득구간 (1인당 GNI대비)	연 \$10,750~\$15,040('04년) (27.0% ~ 37.8%)	연 £5,220까지('04년) (26.2%)	연 € 11,689('04년) (43.8%)
최대급여 아동2인기준 (1인당 GNI대비)	연 \$4,300('04년) (10.8%)	연 £3,875('04년) (19.5%)	연 € 605('04년) (2.3%)
점증률 점감률	40% 21.06%	점증구간 없음 37%	4.6% 11.5%
수급가구 (2004년)	2,100만 가구 (전체가구의 18.6%)	135만 가구 (전체가구의 5%)	900만 가구 (전체가구의 26.5%)
소요예산 (총정부지출 대비율) (2004년)	\$380억 (0.89%)	£47억 (1.72%)	€ 22억 (0.25%)

3 EITC 제도 도입의 의의

-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중점지원
 - 차상위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사회안전망체제를 2중(2-Tier)구조에서 3중(3-Tier)구조로 확충
 - 현행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조에 EITC 추가
 - ① 일반국민은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을 1차적으로 보호
 - ② 차상위계층은 EITC를 통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빈곤층과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활 보장

- 기존의 소득지원형 복지정책(Welfare)에서 근로연계형 복지정책(Workfare)으로 개편



II

EITC 도입 방안

1

적용대상

- EITC제도 도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객관적인 소득과약 여부이므로 이를 고려한 적용대상 설정이 필요
 -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을 주된 기준으로 이용함에 따라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제도 전체의 신뢰성을 결정
 - 제도시행을 위해서 적용대상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과약이 필요

- 소득과약여건은 근로자, 사업자, 자영농어민 등 근로 유형에 따라 편차가 커 일괄적인 시행에 어려움 존재
 - 시행초기에는 소득과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소득과약률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가. 근로자

- 임금근로자 1,489만명 중 국세청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는 1,073만명으로 2004년 기준 72% 수준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소득과약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내역과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조서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소득과약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초기단계부터 적용

나. 사업자

- 2004년 개인사업자 436만명 중 기장에 의한 신고자는 114만명(26.1%)으로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비율이 낮아 현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 개인사업자의 소득과악률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EITC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표>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현황(2004귀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납세인원)	확정신고대상				과세미달 무신고자
	계	기장신고	추계신고	비사업자등	
436만명 (100.0%)	229만명 (52.5%)	114만명 (26.1%)	99만명 (22.7%)	16만명 (3.7%)	207만명 (47.5%)

다. 특수직 사업자

- 특수직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세법에서는 사업자로 분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서 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자라 할 수 있음
 -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등을 특수직 사업자로 통칭
 -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로 보는 견해도 있음
-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과악이 어려움
 - 2006.1월부터 사업장제공자에게 특수직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등 8개 업종)의 과세자료(소득금액 등)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여
- 소득과악정도에 따라 사업자 적용단계에서 EITC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라. 농·어민

- 영세 농업구조로서 소득과약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정확한 소득과약을 전제로 하는 EITC 적용이 곤란
 - 농민의 60% 이상이 1ha 미만을 경작하고 있으며 작물재배업의 경우 현재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현재 다양한 농어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동 제도와의 연계성 확보도 필요
 - 2005~2009년 5년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농업직불제 등 소득지원제도 존재
- 중장기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소득과약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필요
- 농어민 지원정책의 방향,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마.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2005년말 기준 약 34만명 수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EITC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보호대상을 내국인에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내국인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근로자가구로 한정하여 시행함을 반영
 - 도입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EITC 정착단계에서 확대 여부 검토
 - 2005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4.3만건

□ 외국의 경우에도 나라별로 적용에 차이

- 미국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와 취업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배우자가 내국인(영주권자)인 경우로 제한
- 캐나다는 배우자가 내국인(영주권자)인 경우 적용
- 영국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표> 외국인 근로자 현황(2005)

(단위: 만명, %)

	계	취업가능 가족동반가능	취업가능 가족동반 불가능			불법 체류자
		전문기술인력	비전문취업자	연수취업자	산업연수생 등	
근로자수	34	2	5	5	4	18
비율	100	5.9	14.7	14.7	11.8	52.9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2 수급 자격

- EITC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규모가 결정되나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 기준외 부가적인 기준을 이용
 - 정부지원 필요성과 출산율 정책 등의 지원을 위한 아동 수 기준
 - 가구의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총소득 기준
 - 소득과악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산기준
 - 주택기준과 일반재산 기준을 동시에 적용

가. 아동 수 기준

-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 2인 이상 부양 가구로 한정
 - 아동 2인 이상 부양 근로자가구는 233만 가구로 전체 근로자가구 857만 가구의 27.1%

<표> 부양아동별 근로자가구 현황(2004)

전체 근로자가구	18세 미만 부양아동 없는 가구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			
		합 계	아동1인 가구	아동2인 가구	아동3인 이상가구
857만가구	471만가구	386만가구	153만가구	205만가구	28만가구
100%	55%	45%	17.7%	23.9%	3.2%

- 외국의 경우 아동부양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최근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경우에도 지원액은 미미
 - 미국의 경우 1975년~1993년 기간동안 아동 있는 가구만 적용
 - 1991년부터 아동 1인, 2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1994년 이후에는 아동 없는 가구도 적용

- 영국은 1971년~2002년기간 동안 아동 있는 가구만 적용
 - 2003년 이후에는 아동 없는 가구도 적용
- 프랑스는 아동 없는 가구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제도의 주 목적이 소득 보전이라기 보다 근로유인에 있기 때문
- 호주·뉴질랜드는 아동 부양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한정

□ 부양아동의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

- 아동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상 연령기준과 통일
-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적용

□ 미국의 경우 아동연령조건은 19세 미만(학생은 24세 미만)이며 영국은 16세 미만(학생은 18세 미만)으로 규정

-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18세 미만

나. 총소득 기준

1) EITC 적용 최대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 최대소득범위는 상대적 빈곤층의 범위,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1인당 GN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의 경우 적용 최대소득은 최초 시행한 1975년 연 \$8,000로 설정하고 10년간 연 \$8,000~10,000 수준을 유지

- 1994~1996년간 적용소득을 대폭 인상하고 1997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
- 적용 최대소득은 1인당 GNI의 90~100%수준에서 안정적 변동
 - 2005년 적용 최대소득은 연 \$37,263(아동 2인 부양 부부합산신고 기준)로 1인당 GNI 대비 89% 수준

<표> EITC 최대적용소득과 1인당 GNI 비교

	1975	1985	1988	1991	1994	1996	2002	2005
최대적용소득	\$8,000	\$11,000	\$18,576	\$21,250	\$25,296	\$28,495	\$34,178	\$37,263
최대적용소득 / 1인당 GNI	105.7%	97.1%	88.3%	90.5%	95.8%	99.1%	90.9%	89.0% ('04년)

주: 아동 2인 부양 부부합산신고 기준

- 적용 최대소득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비 비중 등을 감안하여 연 1,700만원 수준이 바람직
 - 전국가구 중위소득(3,380만원)의 50%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과 유사
 - EITC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
 - OECD 소득분류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을 포함
 - 2007년 예상 1인당 GNI(1,805만원)의 94% 수준으로 미국의 현재수준을 소폭 상회

<표> 전국가구 소득계층별 분류

분류	중위소득기준 (OECD 기준)	2007년 예상 전국가구 중위소득(3,380만원 기준)
상류층	150% 이상	5,070만원 이상
중상층	70~150%	2,366만원~5,070만원
중하층	50~70%	1,690~2,399만원
상대적 빈곤층	50% 미만	1,690만원 미만

주: 2005년 전국가구 중위소득 연 3,063만원을 과거 2년간 평균증가율(5%)을 반영하여 추정

2) 총소득의 범위

- EITC 적용 여부 결정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 합산하여 산정
 -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는 것은 대부분 실비변상적 성격과 공공부조적 성격인 점을 감안
 - 총소득에는 사업·근로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 및 사업소득 성격인 산림소득이 포함

-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불과하고 고액인 경우 재산기준에 의해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총소득 범위에서 제외

- 소득종류별 총소득 산정기준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 등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총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총수입금액을 총소득으로 함
 - 미국의 경우도 EITC 적용 기준이 되는 “조정된 총소득”(AGI : Adjusted Gross Income) 산정시 사업용 경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교육비공제·보험료공제·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는 차감하지 않음

다. 재산기준

- EITC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유인형 복지제도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재산기준보다는 자본소득을 부가적인 지표로 이용
 - 미국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투자소득 규모가 연 \$2,700 초과할 경우 적용 제외('05년 기준)
 - 영국은 2003년까지 시행한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에서는 £8,000의 금융재산 기준이 있었으나 WTC 개편시 폐지
- 소득과악이 미흡한 우리 현실 등을 감안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재산기준 필요
 - 재산기준은 주택과 일반재산으로 분리하여 적용

1) 주택보유 여부

-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무주택가구를 지원
 - EITC 도입 초기에는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부양아동이 있는 총 근로자가구(386만 가구) 중 무주택가구는 170만 가구로 44.5%에 해당

<표> 주택보유 여부에 따른 대상가구의 변화

구 분	아동수	총대상가구	소득 1,700만원
			이하 가구
부양아동 있는 총 근로자가구	1인 이상	386만 가구	99만 가구
	2인 이상	233만 가구	56만 가구
국민주택규모 이하 보유 근로자가구 (무주택 포함)	1인 이상	356만 가구	91만 가구
	2인 이상	214만 가구	53만 가구
무주택 근로자가구	1인 이상	170만 가구	54만 가구
	2인 이상	97만 가구	31만 가구

2) 재산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직접 배제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으나 복잡한 소득환산과정이 필요한 문제점

<표> 재산만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4인가구 대도시 기준)

재산종류	재산가액 ①	공제액 ②	소득환산율(월) (년 기준) ③	재산환산소득(월) (년 기준) (①-②)×③
일반재산 (주택, 토지)	7,100만원	3,800만원	4.17% (50.0%)	140만원 (1,700만원)
금융재산	6,600만원	4,400만원	6.26% (75.1%)	140만원 (1,700만원)
자동차	139만원	-	100% (1,200%)	140만원 (1,700만원)

- 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인 가구로 EITC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재산만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1억원 수준
 - 일반재산 상한선 7,100만원과 평균부채 수준 2,800만원을 고려할 경우 차상위계층의 재산기준 상한은 약 1억원
 -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국민주택 규모 공동주택 기준)이 9,269만원 수준임을 감안

<표> 전국 중소형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2006년 1월)

구분	50㎡~60㎡ (15~18평)	60㎡~85㎡ (18~25.7평)
전체	7,247만원	9,269만원
아파트	8,314만원	10,269만원
연립	3,794만원	4,967만원

주 : 전국 871만호의 주택중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582만호(67%)

3**수급 단위 및 수급액 결정****가. 수급단위 : 가구단위 운영**

- 가구단위로 운영하여 가구의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 외국(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가구단위 제도 운영

- 개인단위 소득세 체계라도 EITC제도는 가구단위 제도 운영 가능
 - 우리나라는 개인단위 과세체계이나 EITC를 가구단위로 운영하더라도 국세청 전산능력을 확충하면 집행상 큰 어려움 없음
 - 다른 국가에서도 과세단위와 EITC 급여 단위는 별개로 운영
 - 영국 : 과세체계는 개인단위, EITC 운영은 가구 단위

- 부부와 부양아동으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구 포함)를 EITC 적용대상 가구로 봄
 - 성인 부부의 근로에 의한 아동 부양을 강조하며 인위적인 가구분리 가능성을 고려
 - 외국도 가구 구성원을 부부와 부양아동으로 규정
 - 아동의 부양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상 기준에 따름
 - 단, 재산기준은 재산분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대단위 적용

나. EITC 급여 결정 방법

□ 부부의 근로소득 합산액을 기준으로 EITC 급여 결정

□ EITC 급여산정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한정

○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

- 사회보험료 부과기준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되어 2008년 부터 시행 예정

○ 미국·영국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으로 EITC 급여 산정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

○ EITC 급여액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

-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EITC 초기 시행단계의 제도 취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산도 간편

○ 사업소득은 총소득에 포함하여 EITC 배제기준 해당 여부 결정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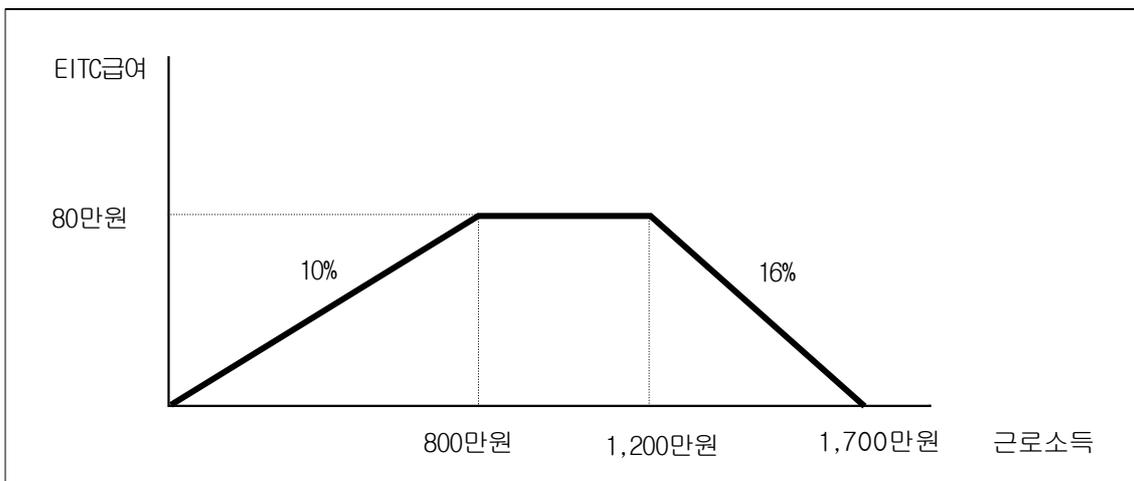
- 사업소득이 배제기준으로만 작용하므로, 사업소득의 신뢰도가 낮은 현 단계에서 EITC 급여액에 대한 마찰을 완화

Ⅲ EITC 도입 모형 설계

1 도입 모형

가. 모형 형태

- EITC 시행국들은 EITC의 정책 목적과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노동시장 특성에 따라 상이한 모형
 - 근로유인을 위해 점증구간 설치 : 미국, 프랑스
 -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해 점증구간 없이 평탄 - 점감형태의 모형 운용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 - 평탄 - 점감형태의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 영국·호주 등은 점증구간이 없고, 일정수준의 최대급여후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를 삭감하는 점감구간만 있어 근로유인 미약
 - 프랑스는 점증구간이 있으나 가구 구성원별로 급여를 산출하는 등 제도가 복잡하여 채택하기 어려움



나. 적용 최대소득 구간

- 적용 최대소득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비 비중 등을 감안하여 연 1,700만원 수준이 바람직
 - 전국가구 중위소득(3,380만원*)의 50%수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과 유사
 - * 2005년 전국가구 중위소득 3,063만원을 과거 2년간 평균증가율(5%)을 반영하여 추정
 - EITC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배 이하)을 지원하는 취지를 반영
 - OECD 소득분류에 따른 상대적 빈곤층(중위소득 50% 이하)을 포함

다. 점증구간 상한소득 및 평탄구간 상한소득

- 근로자 평균임금의 40%~60% 수준인 상대적 저소득 근로자가 최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800만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법정 최대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을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 수준(2007년 예상)
 - 1,200만원은 가구당 평균 근로인원 1.5명이 최저임금으로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수준
 - 점증구간 상한소득과 평탄구간 상한소득은 1인당 GNI 대비 44%, 66% 수준으로 미국(27%, 3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표> 점증구간·평탄구간 분석(아동 2인 가구 기준)

점증구간 상한소득(A)	평탄구간 상한소득(B)	점증구간 평탄구간비교(B/A)	최저임금(C)과의 비교 (2007년 800만원 가정, 주 40시간 근무기준)		1인당 GNI*와의 비교 (2007년 1,805만원 (D))	
			A/C	B/C	A/D	B/D
800만원 (\$11,000)	1,200만원 (\$16,370)	150% (149%)	100% (85%)	150% (114%)	44% (27%)	66% (36%)

주 1: 2007년 1인당 GNI : '05년 1인당 GNI(1,669만원)에 '06~'07년간 연평균 4% 증가 가정
 주 2: ()은 2005년 미국 아동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기준

라. 점증률과 최대급여액 · 점감률

□ 점증률 10%, 최대급여액 80만원

- 점증률은 근로자 사회보험료(7.2%) 수준 등을 감안하여 10%로 설정
 -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 : 7.19%(국민연금 4.5, 건강보험 2.24, 고용보험 0.45)
- 최대급여액은 점증구간 상한소득에 점증률을 곱하여 산정
 - 80만원(점증구간 상한소득 800만원×점증률 10%)
 - 2007년 1인당 GNI(예상) 대비 4.4%, 최저임금 연간소득 대비 10% 수준
- 시행 초기에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에 필요한 최소금액 수준으로 설정하여 부정수급 소지를 최소화하고 비적용자와의 불형평 문제 완화
 - 시행초기 최대급여가 커지면 부정수급 등 부작용 우려(EITC를 30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부정수급이 총지급액의 약 30%에 달한다는 조사 보고)
- 향후 사업자 계층으로의 제도 확대에 따라 사업자의 사회보험료 수준을 감안하여 점증률을 점차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
 - 미국도 1975년 시행후 10년간은 사회보험료 보전 수준에서 점증률을 10%로 유지했으며 1994년 이후부터 점증률을 인상하여 소득지원 강화

<표> 미국 EITC의 점증률과 사회보험료를 비교

	1975	1979	1987	1993	1996	2005
점증률(A)	10%	10.0%	14.0%	19.5%	40.0%	40.0%
사회보장세(B)	11.7%	12.26%	14.3%	15.3%	15.3%	15.3%
A/B	85.5%	81.6%	97.9%	127.5%	261.0%	261.0%

- 점감률 : 근로저해 효과 완화를 위해서 낮은 점감률이 바람직하나 시행초기 예산제약 등을 고려
 - EITC 적용 최대소득을 1,700만원으로 하고, 평탄구간을 800만원~1,200만원으로 하는 경우 점증구간폭(800만원)보다 점감구간폭(500만원)이 짧아 점감률이 점증률보다 높아지게 됨
 - 평탄구간 상한소득 1,200만원, 적용 최대소득 1,700만원, 최대급여 80만원인 경우 점감률은 16%
 - $80\text{만원} \div (1,700\text{만원} - 1,200\text{만원}) = 16\%$
 - 점감률은 20% 수준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점감률이 20% 이상일 경우 점감구간 내에 위치한 근로자의 한계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35%)보다 높게 될 가능성
 - 점감률 20%시 한계세율 = 점감률 20% + 사회보험료 7.2% + 소득세율 8% = 35.2%

<표> 미국 EITC 아동 2인 가구 기준 점감률 변화

(단위 : %)

	1975~1978	1979~1984	1985~1986	1991	1993	1995	1996~
점 감 률	10	12.5	12.22	12.36	13.93	20.22	21.06

마. 소요예산

- 제시된 EITC 도입 모형을 적용할 경우 대상가구수는 약 31만 가구, 소요 예산은 연 1,500억원 수준

2**제도 확대 및 소요자원 조달**

- 제도 확대의 우선순위는 소득과약 측면, 형평성 측면, 급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소득과약은 EITC 적용대상·급여수준 결정 등에 필요한 전제조건
 - 제도의 형평성은 합리적인 적용대상의 설정으로 높일 수 있으며 EITC 조기정착을 위해 중요
 - 급여의 실효성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EITC 급여의 충분성

- 요소별 상대적 중요성은 형평성이 급여수준보다 우선
 - 근로를 통한 복지제도에서의 탈피유인 제공,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등을 위해 적용대상의 확대가 우선 요구됨
 - 형평하지 못한 급여인상은 EITC제도 정착에 불리
 - 따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양아동 수 제한 및 재산기준의 완화가 필요
 - 무주택 요건의 폐지 등 재산기준의 완화와 모든 부양아동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구로의 제도 확대가 우선 시행될 필요
 - 사업자로의 확대는 소득과약을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시행

- 다만 무자녀가구로의 확대는 성인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지원의 당위성이 낮으므로 사업자까지 제도 확대 이후에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성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득 지원의 필요성이 낮음
 - 지원하더라도 근로유인 제공측면의 낮은 급여수준 설정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노동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도 필요

- 급여인상은 사업자로의 확대시기 이후가 바람직
 - 충분한 급여지급은 저소득가구의 사회보험료를 보전하고 나아가 소득지원 효과를 강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에 대해 EITC를 시행(1975년)한 미국의 경우에도 실질급여의 유의미한 인상(1987년 550\$→ 851\$)과 무자녀가구로의 확대(1994년)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

- 소요재원은 적용대상 범위와 급여수준에 따라 증가
 - 부양아동이 2인 이상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단계에서는 연간 1천 5백억원 수준 재원소요 전망
 - 부양아동 1인 이상인 가구로 확대하고 무주택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연간 4천억원 소요예상
 - 적용대상을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매년 약 1조원 이상 소요 전망

<표> 제도확대에 따른 예산규모

구 분	근로자 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 (‘07~‘09년)	2단계 (‘10년~‘12년)	3단계 (‘13년부터)	4단계
근로자				
	무주택자 아동 2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자 영 사업자	-	-		
	-	-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특수직 사업자	-	-		
		-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적용가구 (전체가구 대비)	약 31만 가구 (18%)	약 90만 가구 (5.3%)	약 150만 가구 (8.8%)	약 360만 가구 (21.2%)
연간 소요예산 (‘05년 GNI대비)	약 1천5백억원 (0.02%)	약 4천억원 (0.05%)	약 1조원 (0.12%)	약 2조 5천억원 (0.30%)
역점 추진	○ 과세미달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소득과약률 제고	○ 근로자, 사업자 (특수직 포함) 소득과약률 제고	○ 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과약률 제고	○ 사업자(특수직 포함) 소득과약률 제고

주 : 2005년 GNI : 805조원

□ EITC 적용단계별로 재원조달방법을 다양화

- 근로자 적용단계(1, 2단계)에서는 소득세 자연증가분을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재원조달 가능
- 사업자 시행단계 이후(3, 4단계)에는 비과세·감면의 축소·폐지 등 별도 대책 마련 필요

IV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EITC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운영방식
 - 소득이 최저생계비(2006년 4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미만인 경우 최저생계비 미달액을 보충해주는 소득지원제도
 - 현금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선)에 미달하는 만큼을 보충지원
 - 근로유인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사업 참여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2006년 2만명, 216억원)
 -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10% 자활장려금 제도는 미 실시
 - 2종의 현금급여(생계·주거급여)와 5종의 현물급여(교육·의료·자활·해산·장제)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급여방식
 - 기초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면 현금·현물급여 중단
- 기초수급가구 현황
 - 2005.12월 현재 기초수급가구 81만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약 20만 가구
 - 이중 18세 미만을 아동을 부양하는 수급가구는 약 11만 가구이며, 아동 2인 이상 부양 가구는 약 5만 5천 가구

기초수급가구	근로소득 있는 가구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	
		아동 2인 이상 부양	아동 2인 이하 부양
81만가구	20만가구	11만가구	5만 5천가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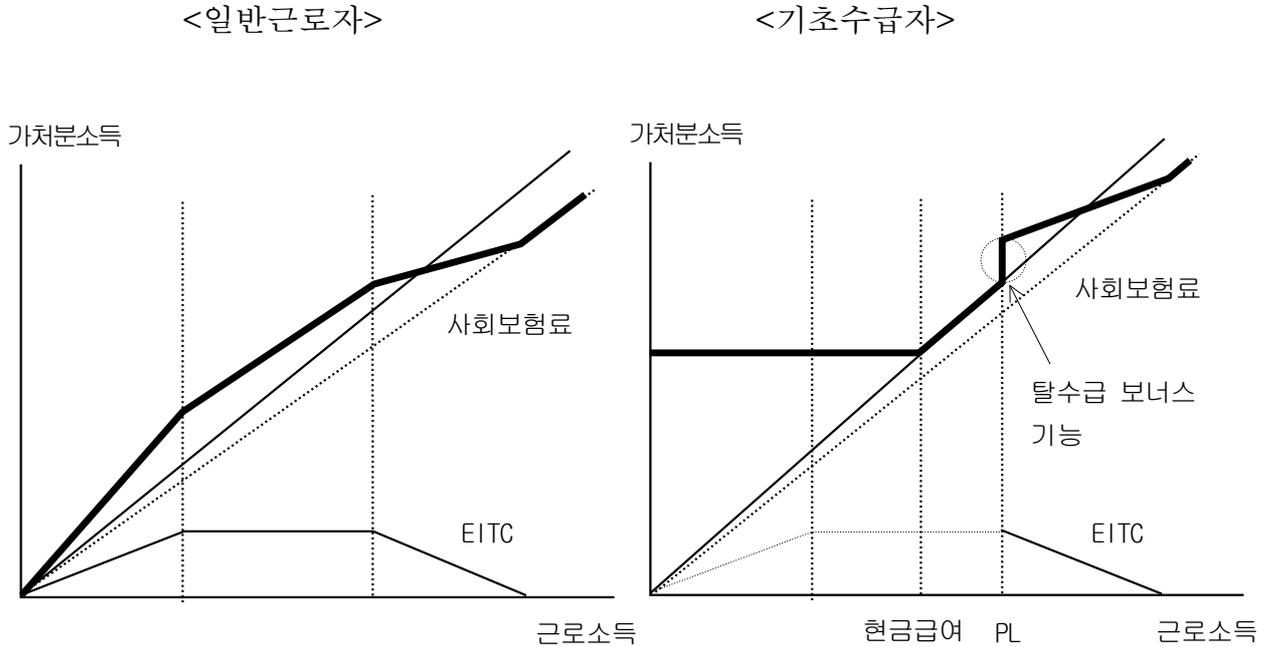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검토

- EITC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두 가지 대안에 대한 장단점 검토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제외 방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방안

가. 제1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제외 방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제외시 장점은 다음과 같음
 - 기초수급자의 경우 탈수급 시점부터 EITC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되므로 차상위계층으로의 도약을 위한 근로유인 제고
 - 탈수급시 나타나는 소득감소(현물급여 상실 등)를 완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빈곤의 함정문제를 완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유인 제공
 -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의 필요성에 부합하며 중복지원에 따른 비판에서 자유로움
 -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주안을 두는 시행초기 여건에 부합
- 반면 기초수급자 적용 제외시 단점은 다음과 같음.
 - EITC 급여액이 적은 시행 초기에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에 한계
 -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시 상실되는 현물급여 등 가치(연간 약 200만원) 이상의 EITC 지급이 필요
 - 같은 근로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 여부에 따라 EITC 적용이 달라짐에 따른 형평성 문제
 - 기초보장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절차 복잡
 - 기초수급자의 일반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자활장려금(10%) 적용 요구 가능성
 - 기초보장제도의 보충급여 원리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 곤란

<그림>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제외



나. 제2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방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시 장점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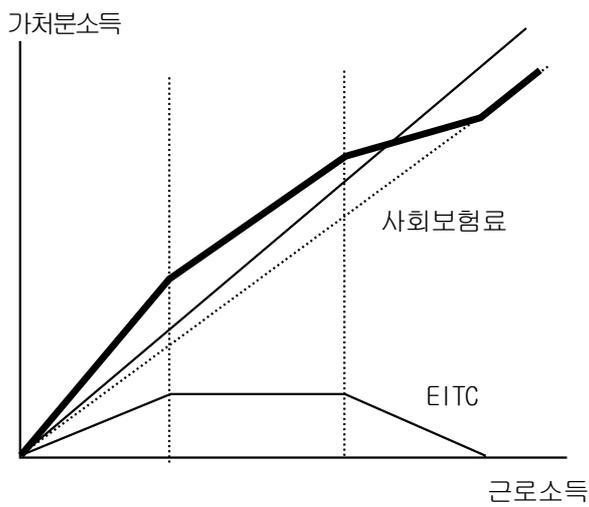
- 보충급여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는 근로비유인 구조의 문제에 대응하여 이들의 취업과 근로를 장려할 수 있음
- 현재 기초수급자의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자활장려금(10%) 시행이 유예되고 있으며, 자활장려금 보다 EITC가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월
- 지원 필요성이 많은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 일반근로소득에 대하여 기초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EITC 적용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시 단점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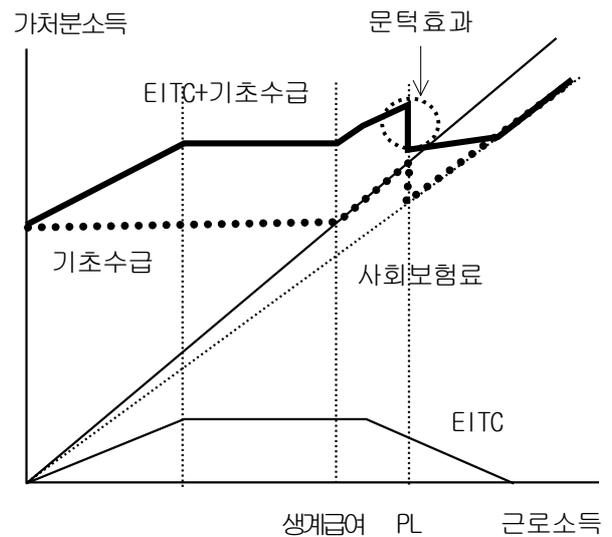
- EITC를 지급하더라도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효과는 없음
 - 탈수급 시점에서 현물급여가 중단되고 사회보험료(소득의 7.2% 수준)가 부과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턱효과(소득역전현상)를 없애기 어려움
 - EITC 급여수준이 높을수록 탈수급 저해효과가 커짐

<그림>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일반근로자>



<기초수급자>



<표>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에 따른 효과

	제1안 (기초수급자 EITC 적용제외)	제2안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지 원 대 상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계층 외 기초수급자도 포함
근 로 유 인 촉 면	· EITC만큼 소득이 추가되어 근로 유인 효과 큼	· 보충급여 방식에 따른 일하는 기초수급자 근로유인 문제 해소
소 득 지 원 촉 면	· 사회보험료 수준의 EITC 지급으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보장 외에 EITC 지급으로 근로유인 강화
탈수급 촉 면	·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시점부터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EITC로 보전받아 탈수급 유인 제공 (다만, 급여수준이 낮은 초기단계에서는 탈수급 유인에 한계)	· 탈수급시 중단되는 현물급여 상실로 인한 문턱효과 해결이 여전히 과제
예 산 촉 면	· 시행초기에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 재정부담 완화	· EITC 적용을 통해 현재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자활장려금 소요 예산 대체
형평성 촉 면	·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EITC로 지원함으로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형평성 제고	· 보충급여 방식의 근로소득에 대한 한계세율(100%)이 점증구간에서 점증율만큼 감소
집 행 촉 면	· 시행초기에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관리가능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정수급 등 집행상 문제점 최소화	·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소득자의 근로소득 파악을 국세청에서 담당 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향과 부합

1. 신청주의

- 종합소득세 신고시 EITC를 신청한 가구에 대하여 지급
 - EITC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므로 일반환급과 같이 신청자에 한하여 EITC 적용
 - EITC 신청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내역과 사용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등이 상호확인되는 경우에만 EITC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
 - EITC 지급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부동산·금융재산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전 신청 필요
 - EITC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도 신청을 전제로 EITC 급여 지급
 -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 신청방법의 용이화
 - EITC 신청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신청장치 등 마련
 - 자원봉사단체 등 EITC 신청 협조기관의 활동 장려
 - 미국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 Program : VITA) 등이 저소득층의 EITC 신청을 무료로 지원

2. 지급방법

-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
 - 일시에 금액을 지급받으므로 급여수령자의 만족도가 크고 행정의 편의성도 확보
 - 미국(연 1회 지급) : 수급자들의 EITC 급여 사용처가 식료품 구입, 자녀 교육비, 신용카드 빚 청산 등 주로 생활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3. 부정수급자 제재

-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급자가 급여를 받은 경우 EITC 급여액 환수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예 : 10년 또는 5년) 지급제한

4. EITC 급여 지급액의 회계처리

- EITC 급여는 납부할 세액과 상계되는 부분과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분
 - EITC는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조세지출로 처리(환급)
 - EITC 지급시 일반 조세의 환급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되므로 편리
 - 기존의 조세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EITC 지급이 상대적으로 간편
- * 외국의 사례
- 미국 : 세액과 상계부분은 조세지출, 현금지급부분은 정부지출로 처리
 - 프랑스 : 전액 조세지출로 처리

5. EITC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 EITC 집행업무는 그동안 국세청이 담당하던 세수관리에 중점을 둔 징세 행정과 성격이 다른 업무
 - 저소득자 소득과약, 수급자 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에 필요한 집행인력 확충과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